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군산금강중학교

학칙, 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교육목표
꿈을 가꾸고 더불어
즐거운 삶

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칙, 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에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월 4일(수)부터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각 학년 교무실이 나 인성인권안전부실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학습에 필요하지 않는 전자기기 또는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지도시 가정에서도 참고하여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사가 주의, 조언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위치로 분리,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의 분리	교사가 지정된 좌석, 위치로 이동할 것을 지시 실외 공간의 경우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복도 (15분)	1회 주의(1호 또는 2호 지도) 후 실시	교과 관련 과제 부여
	나	각 학년실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해당 학년실에 학생 인계 요청 → 해당 학년실 교사가 학생 인계	행동성찰문 + 교과 관련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 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각 학년실 (점심시간 내, 방과후 30분)	하루에 누적 없이 하루 1회 지도 식사(20분 부여) 전/후로 각 학년실로 이동	교과 관련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 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인성인권안전부실 (60분 이내)	해당 학년실 교사가 인성인권안전부실로 학생 인계 지도 시간과 사유를 학교장에게 보고	행동성찰문 + 교과 관련 과제 부여

- ①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조 제3항 '가' 항에 근거하여 본교 조회시간 8:45 이후에 출석하는 학생은 지각으로 판단하고, 제9조 제3항 '다' 항에 근거하여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미인정 결과 부여 및 수업 지각으로 판단함.
- ② 생활지도 불응시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참해 행위(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제9항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u>전자기기(휴대폰, 테블릿PC 등), 학습에 필요하지 않는 물품</u>	당일	교탁 서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군산금강중학교 생활규정 제27조 <u>[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u>	5일 이내	해당 학년실 (해당 담임교사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에게 알림 ·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물품 전달 ※담임교사는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 · 담임교사가 해당 사안을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학부모에게 알림 · 학교장은 가정통신문, 유/무선, 아이엠스쿨 등을 통해 물품보관 해당 사안을 학부모에게 알림 · 물품을 보관 중인 담임교사는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3 <u>『요건1』 3회 미제출</u>			

- ① 『요건1』 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1항, 제3항, 군산금강중학교 생활규정 제3장,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은 조 · 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요건1』과 군산금강중학교 생활규정 제3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3회 지키지 않을 때는 『요건3』과 군산금강중학교 생활규정 제3장 제30조 제4항에 따라 5일 이내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군산금강중학교 생활규정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물건(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

2023. 10. 4.

군 산 금 강 중 학 교 장(직인생략)